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980

2017. 8. 30. 기 획 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8월 14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17년 8월 16일

다. 상정결과:

【서울특별시의회 제276회 정례회】

-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2017. 8. 30)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 의결(원안가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기획조정실장 장혁재)

 재정투융자기금 존속기한이 2017년 12월 31일까지임에 따라 원활한 기금운용을 위해「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임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윤병국)

가. 개정안의 개요

- 본 개정안은 특별회계 및 타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해 공사 및 기금 등에 효율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어 운용중인 재정투융자기금의 존속기한이 2017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임.
-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의 출연금, 기금 및 특별회계 여유재원 예수금, 기금운용 수익 등으로 조성되며, 일시적인 사업비 증가로 인한 재원 부족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 융자 재원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

나. 재정투융자기금 운용 현황

- 재정투융자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에 특별회계 및 타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고 효과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2년 설치된 이후 현재까지 운용중임.
-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과 특별회계 및 타 기금의 여유재원 예수금, 기금운용수익을 통해 조성되며, 일시적인 사업비 증가 등에 따라 재원이 부족한 특별회계나 타 기금 융자 재원 등의 용도로 활용됨.

2016년 총 조성액은 2조 5,760억원,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 규모는
1조 3,279억 9천 7백만원이고, 2017년 운용규모는 6,543억 2
천 3백만원으로 서울에너지공사 신규융자금 255억원을 비롯해 예수금 원리금 상황과 금융기관 예치 등으로 활용할 계획임.

(2017년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

(단위: 백만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목	당초(A)	변경(B)	증감(B-A)	항목	당초(A)	변경(B)	증감(B-A)
합 계	805,823	654,323	△ 151,500	합 계	805,823	654,323	△ 151.500
융자금 원리금회수	90,081	72,681	△ 17,400	융 자 금	_	25,500	25.500
예 수 금	123,000	20,900	△ 102,100	예 탁 금	120,000	80,000	△40,000
예탁금 원금회수	472,192	440,192	△32,000	예수금 원리금상환	275,687	275,687	_
예치금 회수	99,537	99,537	_	예 치 금	410,134	273,134	△ 137,000
이자수입	21,013	21,013	-	기본경비	2	2	

2016년말을 기준으로 예탁금 총규모는 주택사업특별회계 1,753억원, 도시개발 2,750억원, 감채기금 5,840억원 등 2조 4,765억원이며, 융자금은 서울도시철도공사 733억원, 서울메트로 476억원, 서울주택도시공사 200억원 등 1,409억원임.

다. 기금존속기한 연장 필요성

○ 정부는 기금 운용의 효율화와 무분별한 기금 설치 제한 등을 목적으로

지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를 통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하도록 하고, 존속기한을 초과해 기금의 존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 5년의 범위내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재정투융자기금은 서울시의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통해 도시기반시설조성 및 지역개발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992년 설치되었으며, 기금의 존속 필요성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 해 지난 2012년 2017년 12월 31일까지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한 바 있음.
- 재정투융자기금은 설치 이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타 기금의 여유재 원을 통합관리하고, 도시철도와 도시고속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의 조성 에 소요되는 각종 자금의 융자와 대규모 건설사업을 비롯한 지역개발 사업에 널리 활용되어 왔음.
- 무엇보다 특별회계와 타기금의 여유재원 활용을 통해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유익하고, 일시적인 사업비 증가로 인한 재원 부족이 발생한 특별회계와 다른 기금 융자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한 주요 시정 사 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고 평가됨.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른 서울시 각종 자금의 통합관리기금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재정투융자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판단에는 기금의 설치목적과 그동안의 운용실적, 현재 특별회계와 기금 등에 예탁되고 있는 자금의 효과적인 운용과 각종 융자금 회수 문제 등의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다만, 여유자금 운용의 효율성 강화와 자금운용 합리화, 기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장기적인 재원 확보 노력 등과 함께 통합관리기금의 운용 과정에서 혹시 발생할 우려가 있는 법정 용도외 융자 등의 문제가 발생 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

Ⅳ.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V. 토론요지: 「없음」

Ⅵ.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Ⅷ.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속기한은 <u>2017년 12월 31일</u> 까	<u>2022년 12월 31일</u>
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	
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	
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	
여 기금의 존속기한은 연장할 수	
있다.	